

약 관

개인연금저축

노후적립연금보험 보통보험약관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제 1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를 "제 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제 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 1급 내지 제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제 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 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제 1항 제 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기를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에 정한 연금유형과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연금 유형 : 정액형, 체증형 (5%, 10%, 15%체증)

2.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확정연금형

제 3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제 1보험기간 과 제 2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1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2. 제 2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개인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하고, 부부연금형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와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후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 1항 제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새로이 제 1항 제 2호에 해당되는 종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그러나 연금지급 개시이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된 이후에는 새로이 제 1항 제 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 4조 (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6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6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⑤ 제 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또는 제 2보험기간중 개인연금형은 피보험자, 부부연금형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5조 (계약의 세제혜택등)

- ① 이 계약은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라 합니다) 및 연금액(배당금 포함,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면제(이하 "이자소득세 면제"라 합니다) 받습니다.

② 제 1항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보험계약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계약을 해지 또는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각호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경우
 3. 천재·지변
 4. 계약자가 퇴직한 경우
 5.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6.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7. 계약자가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병시
 8.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제 1항의 이자소득세 면제의 경우 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은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제 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7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 ① 회사가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 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8조 (약관 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9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①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제 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 제 4호의 경우 연금수익자로 하며, 동조 동항 제 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보험금수익자(이하 "보험금수익자"와 "연금수익자"를 합하여 "수익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연금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가 제 1항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 1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 제 4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동항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10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11조 (계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 1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 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급여금과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일시에 지급
 2. 제 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급여금과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일시에 지급
 3. 제 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 2급 내지 제 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 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4. 제 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 있을때 : 연금 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
- ② 제 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경우 장애분류표중 제 1급의 장애 또는 장애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애진단을 기준으로 장애분류표중 제 1급의 장애 또는 장애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제 1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항 제 2호 또는 제 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⑤ 제 1항 제 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 1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애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해장애급여금을 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장애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⑥ 제 5항에 규정한 재해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장애급여금을 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가 이미 재해장애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애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장애에 해당하는 재해장애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애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⑦ 제 5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 6항에 규정하는 장애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에 대하여는 이미 재해장애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 6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재해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2. 제 1호 이외의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애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또는 재해장애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애

제 13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지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년 배당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매년 회사에서 정한 비율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을 계약소멸시에 지급하거나, 제 1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 제 4호의 생존연금 지급시 더하여 드립니다.

제 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애분류표중 제 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 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5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 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 16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는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 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 ⑤ 제 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립니다.

제 17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제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 (보험료의 납입)

- ① 제 2회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보험료의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 1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 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20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2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 ① 제 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

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 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항의 납입기일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 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 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 1항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이전까지 제 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 22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 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3항, 제 4조(계약의 효력), 제 7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 16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23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주민등록등본
3.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항 제 3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24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이내에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 16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일로 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이 3년미만은 4%, 5년미만은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 8년미만은 「정기예금이율 * 110%」, 10년미만은 「정기예금이율 * 120%」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별표 4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 제 4항의 정기예금이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 제외) 중 전년도 수신고 기준 상위 5개은행의 전월 15일자 이율을 산술평균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이율을 매월 적용합니다.

다만, 당월에 적용할 금리가 전월 사용금리의 $\pm 0.2\%$ 범위내일 경우에는 전월금리를 적용하며 전년도 수신고가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⑦ 생존연금과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부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5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 24조(보험금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6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
2. 보험금수익자
3.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확정연금형)

4. 연금지급 개시연령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연금의 지급개시전에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 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 부분에 대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 5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 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전에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부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 1항 제 2호의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 1항 제 3호의 연금지급형태와 제 1항 제 4호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연금의 지급개시전까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7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생존연금의 지급개시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28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9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 3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31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2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3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34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

보장기간	구 분	지 급 액											
제 1보험 기 간 중	책임준비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정기예금이율에 연동한 이율 『정기예금이율 * 125%』로 납입일로 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											
	일반사망급여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200 만원											
	재해사망급여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2호)	500 만원											
	재해장해급여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3호)	<table><tr><td>장해등급</td><td>2 급</td><td>3 급</td><td>4 급</td><td>5 급</td><td>6 급</td></tr><tr><td>지 급 액</td><td>350 만원</td><td>250 만원</td><td>150 만원</td><td>75 만원</td><td>50 만원</td></tr></table>	장해등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지 급 액	350 만원	250 만원	150 만원	75 만원
장해등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지 급 액	350 만원	250 만원	150 만원	75 만원	50 만원								
제 2보험 기 간 중	생존 연금 (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	1. 종신연금형 가. 연금유형 ① 정액형 ② 체증형 (5%, 10%, 15% 체증) 나. 연금 지급형태 ① 개인연금형 <table><tr><td>구 분</td><td>지 급 사 유</td><td>금 액</td></tr><tr><td>피보험자 연 금</td><td>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td><td>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10회보증지급)</td></tr></table>	구 분	지 급 사 유	금 액	피보험자 연 금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10회보증지급)					
		구 분	지 급 사 유	금 액									
피보험자 연 금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10회보증지급)											
② 부부연금형 <table><tr><td>구 분</td><td>지 급 사 유</td><td>금 액</td></tr><tr><td>주피보험자 연 금</td><td>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td><td>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10회보증지급)</td></tr><tr><td>배 우 자 연 금</td><td>주피보험자가 제2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제 2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10년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td><td>주피보험자의 10차년도 연금액의 70 % 지급</td></tr></table>	구 분	지 급 사 유	금 액	주피보험자 연 금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10회보증지급)	배 우 자 연 금	주피보험자가 제2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제 2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10년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의 10차년도 연금액의 70 % 지급				
구 분	지 급 사 유	금 액											
주피보험자 연 금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10회보증지급)											
배 우 자 연 금	주피보험자가 제2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제 2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10년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의 10차년도 연금액의 70 % 지급											

보장기간	구 분	지 급 액						
		2. 확정연금형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지 급 사 유</th><th>금 액</th></tr> <tr> <td>피보험자 연 금</td><td>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td><td>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 준으로 연금지급 기간(5년, 10년, 15년, 20년)에 따 라 계산한 금액 지급</td></tr> </table>	구 분	지 급 사 유	금 액	피보험자 연 금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 준으로 연금지급 기간(5년, 10년, 15년, 20년)에 따 라 계산한 금액 지급
구 분	지 급 사 유	금 액						
피보험자 연 금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 준으로 연금지급 기간(5년, 10년, 15년, 20년)에 따 라 계산한 금액 지급						

- (주) 1. "연금계약 순보험료"란 납입보험료 중에서 제 2보험기간 개시후 연금을 지급하
기 위한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 월납입보험료가 150,000원일 경우에는 연금계약 순보험료는 136,000원
입니다.)
2. 생존연금의 계산은 『정기예금이율 * 125%』를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정기예
금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은 10년보증부 체증형으로, 보증기간의 10년간 연금액은 직
전년도 연금액에 체증율(5%, 10%, 15%)로 체증한 금액을 말하며, 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10차년도 연금액으로 합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회의 보증지급기간안에 사망시에는 10
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5회, 10회, 15회, 20회 각각의 보증지급
기간안에 사망시에는 각각 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
지급일에 드립니다.
 6. 위의 제 4호 및 제 5호의 보증지급 기간안에 사망시에는 해당되는 연금액을 회사
의 승낙을 얻어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정기예금이율 * 125 %』
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8. 정기예금이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은 은행(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 제
외)중 전년도 수신고 기준 상위 5개은행의 전월 15일자 이율을 산술평균하여 보험
개발원이 공시한 이율을 매월 적용합니다.
다만, 당월에 적용할 금리가 전월 사용금리의 $\pm 0.2\%$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전월
금리를 적용하며 전년도 수신고가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 1. 1시행) 중 "손상 및 중독의 외부요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철도사고	E 800 - E 807
2. 자동차 교통사고	E 810 - E 819
3. 자동차 비교통사고	E 820 - E 825
4. 기타도로 교통기관사고	E 826 - E 829
5. 수상교통기관사고	E 830 - E 838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 사고	E 840 - E 845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 (케이블카, 곤돌라 등)	E 846 - E 848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E 850 - E 858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 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001 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E 860 - E 869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E 870 - E 876
11. 불의의 추락	E 880 - E 888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90 - E 899
13.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는 제외한다.	E 900 - E 909 (276.5)
14.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는 제외한다.	E 910 - E 915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E 916 - E 928 (E 927)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E 930 - E 949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E 960 - E 969
18. 법적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E 970 - E 978 (E 978)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E 980 - E 989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E 990 - E 999
21. 전염병 예방법 제 2조 제 1항 제 1종에 규정한 질병	

【별표 3】

장애등급분류표

=====

등 급	신 체 장 해
제 1 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 3 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5 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자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6 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애등급분류 해설>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 2) 정신장애로 인하여 자택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3)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제한"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활 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것"

시력이 0.02 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애"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ㅁ, ㅂ, ㅍ),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 (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 (청력검사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의 뚜렷한 장애"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 (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팔,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것"

팔, 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없는 경우 (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2. "팔, 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운동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 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애"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애"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 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손가락의 장애"

가. "손가락을 잃은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첫째 손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부분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발가락의 장애"

가. "발가락을 잃은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것"

첫째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부분뼈)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애등급분류표중 제 1급의 5, 6, 7, 8, 9, 제 2급의 3, 4, 5, 제 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별표 4】

해약환급금 예시표

=====

(기준 : 전기납, 정기예금이율 9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개월	150, 000	0
2 개월	300, 000	0
3 개월	450, 000	125, 720
6 개월	900, 000	555, 520
1 년	1, 800, 000	1, 427, 360
3 년	5, 400, 000	5, 490, 665
5 년	9, 000, 000	10, 476, 938
7 년	12, 600, 000	16, 422, 553
10 년	18, 000, 000	29, 782, 296
15 년	27, 000, 000	62, 067, 566
20 년	36, 000, 000	117, 085, 530

주) 상기 예시금액은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 * 125 %』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 납입기일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계산된 금액이므로 다음과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1.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되었을 때
2.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과 상이할 때

노후적립 보험료증액특약

제 1조 (특약의 적용범위)

- ① 이 특약은 동일 단체에 소속된 50인 이상의 보험계약자가 일괄로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이라 합니다)
- ② 계약자가 퇴직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소속된 단체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이 특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제 2조 (특약의 보험료 및 증액)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최초 납입보험료를 뺀 증액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계약자가 제 1항에 의해 이 특약으로 증액할 수 있는 보험료의 한도는 직전년도 납입보험료의 30 % 범위 한도까지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납입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임금인상율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2항의 직전년도 납입보험료란 동일보험년도중 납입된 총납입보험료를 월단위로 산술 평균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 3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 약관 제 5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및 연금액(배당금포함)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습니다.

제 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 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일시에 지급
 2. 제 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 있을때 : 주계약 연금 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
- ② 제 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제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③ 계약자는 제 1항 제 2호에 의한 특약의 생존연금을 선택할 때에는 주계약의 생존연금과 동일한 형태로 선택해야 합니다.

제 5조 (추가가입계약의 처리)

제 1조(특약의 적용범위)의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계약자와 동일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가 추가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제 2조(특약의 보험료 및 증액)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 6조 (특약의 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만을 해약할 수 없습니다.

제 7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